

##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오늘  
의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  
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 품 요 약 서

###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이율확정기간동안 보장하여 드립니다.
2. 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납입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된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합니다.
3.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리차환금금조정률(MVA)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이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0년(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 지되는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에 (1-금리차환금금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니다. 이 상품에서 20년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20년의 만기구 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 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 승하게 됩니다.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리차환금금조정률 (MVA)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약환급금에 반영 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 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5.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의 2형(쿠폰형)은 이율확정기간 중 선택하신 쿠폰지급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일정액의 쿠폰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다만, 쿠폰지급금을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 연금개시시점에 일시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Q: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의 추가납입이란 무엇인가요?**

**A:** 이 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이율확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 2개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1)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납입총액(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원입니다.
- (3)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200%입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	---------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200%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30%

**Q: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 계약자는 이월확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는 이월확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 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 ③ ①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의 20%이상으로 한다.
- ④ 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인출 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Q: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드립니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목의 명칭 :

-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_1형(거치형)
-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_2형(쿠폰형)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납입보험료의 한도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일시납	일시납	0세~70세	(가입나이+20세)~9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납입보험료의 한도

- 1,000만원 ~ 50억원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확정연금형 (기간선택형, 금액선택형)
- 상속연금형

-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건강진단

주보험만 가입시 건강진단이 없으며, 특약 가입시 회사는 합당한 보장금액, 나이,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을 감안해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상품의 구성

-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

- +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 (자동부가특약)
-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자동부가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보험금 지급사유

□ **주계약**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별표4(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0만원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쿠폰 지급 금	매년 지급 형	연금 지급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년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쿠폰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매년 분할 계산한 금액
	매월 지급 형	연금 지급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의 매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쿠폰지급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분할 계산한 금액

- 주) 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와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이하 “사망시 지급금” 이라 합니다)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제1항 에서 정한 “사망시 지급금” 을 지급할 때에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사망시 지급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3. 쿠폰지급금은 2형(쿠폰형)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4. 계약자적립액이란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제1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 을 말합니다. 다만, 2형(쿠폰형)의 경우 쿠폰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쿠폰지급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은 쿠폰지급금 계산을 위해 가정한 금액으로, 쿠폰지급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쿠폰지급금 지급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 중 연 단위로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쿠폰지급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 이후 만 20년 경과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은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은 아래 지급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3배가 되도록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의 지급내용

계약자는 약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지급내용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종신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배수가 되도록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부부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종신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70% 또는 100% 지급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상속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확정연금형 (기간선택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
확정연금형 (금액선택형)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연금지급 개시할 때의 계약자적립액에 확정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5%, 10%,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연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을 지급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제1항 제4호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만, 2형(쿠폰형)의 경우 쿠폰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을 최저로 합니다.

3.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 입니다.

4.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으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계약자는 최소보증지급기간 이상 최대보증지급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며,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0.5단위로 조기집중배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최소보증지급기간” 이란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합니다)을 말하며, “최대보증지급기간” 이란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연수를 말합니다.

6. “기대여명” 이란 관련세법에 명시된 통계표 상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확정연금형(기간선택형)의 경우 확정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확정지급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확정연금형(기간선택형)의 경우 연금의 확정지급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확정연금형(금액선택형)의 경우 연금지급 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확정연금형(금액선택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2. 확정연금형(금액선택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13.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절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14.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5.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각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되며, 상속연금형은 연금지급 개시 후 만 1년(연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 1개월,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만 6개월)이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연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3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매 6개월)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 나이
종신 연금형	개인연금형	최소보증지급기간 ~ 최대보증지급기간 (1년단위 선택) 조기집중배수 1 ~ 5배 (0.5단위 선택)	만15~80세	45~80세
	부부연금형 장기간병 연금형	10년, 20년, 30년, 90세, 100세 보증지급	45~70세	45~70세

연금지급형태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 나이
상속연금형		-	만15~80세
확정 연금형	기간선택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확정지급	만15~80세
	금액선택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 기준 5%, 10%, 15%, 20%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지급	만15~80세

- ※ 다만,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합니다.
-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 특약의 소멸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연금전환조건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

계약자가 이 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른다. 저축전환은 전환 전 계약을 2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한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전체 주계약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채보함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연령가산법(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같이 사용가능)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특정 신체부위보장제한부 인수형(1종) 또는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형(2종)을 부가하여 면책기간을 설정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무배당 종신전환특약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 가능한 계약의 조건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따른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명시된 유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전환이 가능하다.

###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 보험 당사자 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제한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제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 타인의 사망보장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관련 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건

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보험료 산출기초

### ○ 보장계약 적용이율

#### Q : 보장계약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계약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계약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보장계약 적용이율은 연복리 2.5% 입니다.

### ○ 적용위험률

####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80%이상 재해장해발생률	
	남자	여자
20세	0.000016	0.000005
40세	0.000014	0.000003
60세	0.000074	0.000021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적립계약 적용이율(공시이율)

#### Q : 적립계약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적립계약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다.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은 국고채 등 투자되는 자산의 수익률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서, 2026년 1월 1일 현재 공시이율은 연복리 3.00%입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이율확정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납입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된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리차환금조정률(MVA)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되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율확정기간의 공시이율

$$\text{공시이율(\%)} = \text{기준금리} - 0.25\%$$

$$\text{기준금리} = \text{국고채권(20년)}$$

- 기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국고채권(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민간채권평가사의 20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번째 영업일에서 4번째 영업일까지의 3 영업일 동안 해당 수익률의 산술폭균값)

##### ② 이율확정기간 후 공시이율

회사는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단, 공

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 금리차환급금조정률(MVA)

- 이율확정기간(계약일로부터 20년) 중 해지시는 계약자적립액에 (1 - 금리차환급금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2형의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쿠폰지급금에 대하여는 금리차환급금조정률(MVA)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리차환급금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left[ \frac{1 + \text{가입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로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금리차환급금조정률(MVA)의 최고한도는 30%로 합니다.
- 금리차환급금조정률(MVA) 계산 시 사용되는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및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은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Q :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오늘의 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 예시**

① 1형(거치형)

- 기준: 일일납 보험료 5,000만원, 55세, 75세연금지급개시, 가입시점 공시이율 연복리 3.09%, 단위 천원, 천원미만절사

1) 최저해약환급금 가정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계약자적 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 금	환급률	계약자적 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0,000	49,748	99.50%	34,824	69.65%	49,749	99.50%	34,824	69.65%
6개월	50,000	50,101	100.20%	35,070	70.14%	50,101	100.20%	35,071	70.14%
9개월	50,000	50,452	100.90%	35,316	70.63%	50,452	100.90%	35,316	70.63%
1년	50,000	50,801	101.60%	35,561	71.12%	50,801	101.60%	35,561	71.12%
2년	50,000	51,943	103.89%	36,360	72.72%	51,943	103.89%	36,360	72.72%
3년	50,000	53,181	106.36%	37,227	74.45%	53,182	106.36%	37,227	74.45%
4년	50,000	54,458	108.92%	38,121	76.24%	54,460	108.92%	38,122	76.24%
5년	50,000	55,775	111.55%	39,042	78.08%	55,776	111.55%	39,043	78.09%
6년	50,000	57,131	114.26%	39,992	79.98%	57,134	114.27%	39,993	79.99%
7년	50,000	58,530	117.06%	40,971	81.94%	58,533	117.07%	40,973	81.95%
8년	50,000	59,972	119.94%	41,980	83.96%	59,975	119.95%	41,983	83.97%
9년	50,000	61,458	122.92%	43,020	86.04%	61,462	122.92%	43,023	86.05%
10년	50,000	62,990	125.98%	44,093	88.19%	62,995	125.99%	44,097	88.19%
15년	50,000	71,392	142.78%	49,974	99.95%	71,400	142.80%	49,980	99.96%
20년	50,000	81,171	162.34%	81,171	162.34%	81,186	162.37%	81,186	162.37%

2) 해지시점 공시이율 1.5%p 상승시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0,000	49,748	99.50%	34,824	69.65%	49,749	99.50%	34,824	69.65%
6개월	50,000	50,101	100.20%	35,070	70.14%	50,101	100.20%	35,071	70.14%
9개월	50,000	50,452	100.90%	35,316	70.63%	50,452	100.90%	35,316	70.63%
1년	50,000	50,801	101.60%	35,561	71.12%	50,801	101.60%	35,561	71.12%
2년	50,000	51,943	103.89%	36,755	73.51%	51,943	103.89%	36,755	73.51%
3년	50,000	53,181	106.36%	38,361	76.72%	53,182	106.36%	38,362	76.72%
4년	50,000	54,458	108.92%	40,045	80.09%	54,460	108.92%	40,046	80.09%
5년	50,000	55,775	111.55%	41,808	83.62%	55,776	111.55%	41,810	83.62%
6년	50,000	57,131	114.26%	43,656	87.31%	57,134	114.27%	43,658	87.32%
7년	50,000	58,530	117.06%	45,593	91.19%	58,533	117.07%	45,595	91.19%
8년	50,000	59,972	119.94%	47,622	95.24%	59,975	119.95%	47,625	95.25%
9년	50,000	61,458	122.92%	49,749	99.50%	61,462	122.92%	49,752	99.50%
10년	50,000	62,990	125.98%	51,979	103.96%	62,995	125.99%	51,983	103.97%
15년	50,000	71,392	142.78%	64,852	129.70%	71,400	142.80%	64,860	129.72%
20년	50,000	81,171	162.34%	81,171	162.34%	81,186	162.37%	81,186	162.37%

3) 현재 공시이율 (연복리 3.09%) 가정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0,000	49,748	99.50%	45,215	90.43%	49,749	99.50%	45,215	90.43%
6개월	50,000	50,101	100.20%	45,590	91.18%	50,101	100.20%	45,590	91.18%
9개월	50,000	50,452	100.90%	45,965	91.93%	50,452	100.90%	45,965	91.93%
1년	50,000	50,801	101.60%	46,339	92.68%	50,801	101.60%	46,339	92.68%
2년	50,000	51,943	103.89%	47,610	95.22%	51,943	103.89%	47,611	95.22%
3년	50,000	53,181	106.36%	48,982	97.96%	53,182	106.36%	48,983	97.97%
4년	50,000	54,458	108.92%	50,401	100.80%	54,460	108.92%	50,403	100.81%
5년	50,000	55,775	111.55%	51,870	103.74%	55,776	111.55%	51,872	103.74%
6년	50,000	57,131	114.26%	53,389	106.78%	57,134	114.27%	53,392	106.78%
7년	50,000	58,530	117.06%	54,962	109.92%	58,533	117.07%	54,964	109.93%
8년	50,000	59,972	119.94%	56,589	113.18%	59,975	119.95%	56,592	113.18%
9년	50,000	61,458	122.92%	58,273	116.55%	61,462	122.92%	58,277	116.55%
10년	50,000	62,990	125.98%	60,015	120.03%	62,995	125.99%	60,020	120.04%
15년	50,000	71,392	142.78%	69,686	139.37%	71,400	142.80%	69,694	139.39%
20년	50,000	81,171	162.34%	81,171	162.34%	81,186	162.37%	81,186	162.37%

② 2형(쿠폰형)

- 기준: 일시납 보험료 5,000만원, 55세, 75세연금지급개시, 계약일 이후 만1개월 경과시점부터 쿠폰지급금 매월지급형, 쿠폰지급기간 20년, 가입시점 공시이율 연복리 3.09%, 단위 천원, 천원미만절사

1) 최저해약환급금 가정시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계약자적 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0,000	49,472	98.94%	34,630	69.26%	49,472	98.94%	34,630	69.26%
6개월	50,000	49,545	99.09%	34,682	69.36%	49,545	99.09%	34,682	69.36%
9개월	50,000	49,614	99.23%	34,730	69.46%	49,614	99.23%	34,730	69.46%
1년	50,000	49,679	99.36%	34,775	69.55%	49,679	99.36%	34,775	69.55%
2년	50,000	49,669	99.34%	34,768	69.54%	49,668	99.34%	34,767	69.53%
3년	50,000	49,720	99.44%	34,804	69.61%	49,719	99.44%	34,803	69.61%
4년	50,000	49,772	99.54%	34,841	69.68%	49,771	99.54%	34,840	69.68%
5년	50,000	49,827	99.65%	34,879	69.76%	49,825	99.65%	34,878	69.76%
6년	50,000	49,882	99.76%	34,918	69.84%	49,881	99.76%	34,917	69.83%
7년	50,000	49,940	99.88%	34,958	69.92%	49,938	99.88%	34,957	69.91%
8년	50,000	49,999	100.00%	34,999	70.00%	49,997	99.99%	34,998	70.00%
9년	50,000	50,060	100.12%	35,042	70.08%	50,058	100.12%	35,041	70.08%
10년	50,000	50,123	100.25%	35,086	70.17%	50,121	100.24%	35,085	70.17%
15년	50,000	50,467	100.93%	35,327	70.65%	50,465	100.93%	35,326	70.65%
20년	50,000	50,865	101.73%	50,865	101.73%	50,865	101.73%	50,865	101.73%

2) 해지시점 공시이율 1.5%p 상승시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계약자적 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 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0,000	49,472	98.94%	34,630	69.26%	49,472	98.94%	34,630	69.26%
6개월	50,000	49,545	99.09%	34,682	69.36%	49,545	99.09%	34,682	69.36%
9개월	50,000	49,614	99.23%	34,730	69.46%	49,614	99.23%	34,730	69.46%
1년	50,000	49,679	99.36%	34,775	69.55%	49,679	99.36%	34,775	69.55%
2년	50,000	49,669	99.34%	35,146	70.29%	49,668	99.34%	35,145	70.29%
3년	50,000	49,720	99.44%	35,864	71.73%	49,719	99.44%	35,864	71.73%
4년	50,000	49,772	99.54%	36,599	73.20%	49,771	99.54%	36,598	73.20%
5년	50,000	49,827	99.65%	37,350	74.70%	49,825	99.65%	37,349	74.70%
6년	50,000	49,882	99.76%	38,117	76.23%	49,881	99.76%	38,116	76.23%
7년	50,000	49,940	99.88%	38,901	77.80%	49,938	99.88%	38,900	77.80%
8년	50,000	49,999	100.00%	39,703	79.41%	49,997	99.99%	39,702	79.40%
9년	50,000	50,060	100.12%	40,522	81.04%	50,058	100.12%	40,521	81.04%
10년	50,000	50,123	100.25%	41,360	82.72%	50,121	100.24%	41,359	82.72%
15년	50,000	50,467	100.93%	45,844	91.69%	50,465	100.93%	45,843	91.69%
20년	50,000	50,865	101.73%	50,865	101.73%	50,865	101.73%	50,865	101.73%

3) 현재 공시이율 (연복리 3.09%) 가정시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	남자				여자			
		계약자적 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계약자 적립액	적립률	해약 환급금	환급률
3개월	50,000	49,472	98.94%	44,963	89.93%	49,472	98.94%	44,963	89.93%
6개월	50,000	49,545	99.09%	45,084	90.17%	49,545	99.09%	45,084	90.17%
9개월	50,000	49,614	99.23%	45,202	90.40%	49,614	99.23%	45,202	90.40%
1년	50,000	49,679	99.36%	45,315	90.63%	49,679	99.36%	45,315	90.63%
2년	50,000	49,669	99.34%	45,526	91.05%	49,668	99.34%	45,525	91.05%
3년	50,000	49,720	99.44%	45,794	91.59%	49,719	99.44%	45,793	91.59%
4년	50,000	49,772	99.54%	46,065	92.13%	49,771	99.54%	46,064	92.13%
5년	50,000	49,827	99.65%	46,339	92.68%	49,825	99.65%	46,337	92.67%
6년	50,000	49,882	99.76%	46,615	93.23%	49,881	99.76%	46,614	93.23%
7년	50,000	49,940	99.88%	46,895	93.79%	49,938	99.88%	46,894	93.79%
8년	50,000	49,999	100.00%	47,179	94.36%	49,997	99.99%	47,177	94.35%
9년	50,000	50,060	100.12%	47,465	94.93%	50,058	100.12%	47,464	94.93%
10년	50,000	50,123	100.25%	47,755	95.51%	50,121	100.24%	47,754	95.51%
15년	50,000	50,467	100.93%	49,261	98.52%	50,465	100.93%	49,259	98.52%
20년	50,000	50,865	101.73%	50,865	101.73%	50,865	101.73%	50,865	101.73%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높은 경우, 금리차환급금조정을(최대 30%)이 적용되어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
- 상기 예시된 1) 최저해약환급금 가정시 해약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 동안은 가입시 확정된 공시이율로 적립하고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최고 MVA값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무리 상승하여도 최저로 보증해 드리는 최저해약환급금입니다.
- 상기 예시된 2) 해지시점 공시이율 1.5%p 상승시 해약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1.5%p 높다는 가정하에 MVA값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3) 현재 공시이율 (연복리 3.00%) 가정시 해약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MVA값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실제 해약환급금 및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를 경우 실제 해약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또한, 실제 해약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과 상이할 경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환급률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Q : 모집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남자 40세, 60세연금개시, 일시납 보험료 1억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2.90% <sup>주1)</sup>	0.67% <sup>주1)</sup>	0.00% <sup>주1)</sup>	0.00% <sup>주1)</sup>	3.57% <sup>주2)</sup>

- 주)1. 1차년도 ~ 4차년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판매 채널(금융기관대리점)별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보장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55세, 연금지급개시 나이 75세)

#### ▶ 경과기간별 사업비 합산표

최초 납입시	2차월 ~ 15차월	16차월~연금개시전
1.310%	0.100%	0.06%

※ 위의 사업비는 주계약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를 합산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수료 안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경과기간별 사업비 합산표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초월도: 일시납보험료의 0.77% (385,000원) 15차월까지: 일시납보험료의 0.04% (20,000원)
		매월	초월도: 일시납보험료의 0.50% (250,000원) 2차월이후: 일시납보험료의 0.06% (30,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일시납보험료의 0.000064% ~ 0.000224% (32원 ~ 112원)
연금수령 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해당사항 없음

###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00% (단,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재납입할 경우 최대 30,000원 한도)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금액 (단, 연 4회에 한하여 면제)

※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부가하지 않으며 기타비용은 최대 30,000원까지 부가합니다.